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가단5235506 손해배상(기)

원 고 1. 한재복

2. 노사홍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이재원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구충서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송수현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엄태섭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심재왕

피 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후주소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

2. 김정은

최후주소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변 론 종 결 2020. 6. 9.



판 결 선 고 2020. 7. 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한재복에 대하여는 2001. 11. 3.부터, 원고 노사홍에 대하여는 2000. 6. 18.부터 각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일부청구).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인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자 김일성, 김정일의 별지 '청구원인 보충 및 규범적 근거'(2020. 4. 1.자 준비서면)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바,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는 비법인 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으로서, 피고 김정은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자인 김일성, 김정일의 상속인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자료의 금액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불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전체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6억 원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김영아

김영아 



청구원인 보충 및 규범적 근거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규범적 판단근거

가. 석명사항

귀 재판부는 지난 변론기일에 “원고들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송환거부와 강제노역 문제에 대한 규범적 판단근거”의 석명을 구하셨습니다.

원고들의 청구원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는 피고측이 전쟁 포로인 원고들에 대한 송환을 거부한 채¹⁾ 원고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하고, 원고들이 탈북을 하기 이전까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강제로 억류한 일련의 반인도주의적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고들은 종전의 청구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을 보충하고, 규범적 근거를 밝히고자 합니다.

1) 강제8~16호증 참조, 당시 북한군 및 중공군에 의해 억류된 국군포로들(실종자 포함)은 8만 2,000여명으로 추정되나, 피고측은 그중 10분의 1에 불과한 8,343명만을 송환하였는데, 이 사건 원고 등 미송환 국군포로들에게 정전협정 체결사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으로의 송환 희망의사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 피고측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사실

(1) 원고 한재복은 1951. 9. 15. 국군 7사단 5연대 1대대에 입대하여 1951. 12. 29. 양구인제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힌 후 북한군에 인계되었고, 1953. 7. 27.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송환되지 아니한 채 내무성 건설대 1709 부대에 편입되어 1953. 9. 말경부터 신창탄광, 궁심탄광, 고건원탄광, 하면탄광 등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1956. 6. 13. 북한의 내각결정 143호로 공민증을 발급받고 북한사회로 강제편입된 후에도 하면탄광에서 계속하여 열악하고 가혹한 조건 하에서 광부로 노역에 종사하였으며, 국군포로 출신이라는 신분('43호'로 불렸음)으로 갖은 차별과 박해 속에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다가 2001. 11. 3.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환하여 2001. 12. 26. 퇴역식을 가지고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갑제3호증의 2, 4,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6, 7, 갑제8호증 내지 갑제16호증 각 참조).

(2) 원고 노사홍은 1952. 4. 24. 국군 수도사단 1연대 1대대에 입대하여 1953. 7. 16. 강원도 철원 금화원남지구 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로 잡혀 평안북도 천마수용소로 끌려갔고, 1953. 7. 27.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송환되지 아니한 채 내무성 건설대 1706부대에 편입되어 함경북도 경원군 하면탄광에 배치되어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1956. 6. 13. 북한의 내각결정 143호로 공민증을 발급받고 북한사회로 강제편입된 후 하면탄광에서 계속 열악하고 가혹한 조건하에서 광부로 노역에 종사하였으며, 국군포로 출신이라는 신분('43호'로 불렸음)으로 갖은 차별과 박해 속에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다가 2000. 6. 18.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환하여 2000. 7. 28. 퇴역식을 가지고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갑제2호증의 6, 8, 15, 16,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3, 4, 갑제8호증 내지 갑제16호증 각 참조).



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3협약’(III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 강제17호중의 1, 2)

피고측이 원고들을 포로송환절차에 따라 남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51조 (강제18호중 중 15쪽)에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되며 어떠한 저애도 가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의 제네바 제3협약이 정하고 있는 전쟁포로에 대한 반인도주의적 일체의 조치를 금지하는” 여러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즉, 위 협약은“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 억류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하게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는 금지되며, 이는 이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보복조치는 금지된다”(제13조), “포로는 스스로 희망하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로운 또는 위험한 성질의 노동에 사용하지 못한다”(제52조), “포로들의 일일 노동시간은 과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제53조),“억류국은 모든 포로에 대하여 월급을 선지불하여야 한다”(제60조), “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다”(제62조),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제118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가입여부를 떠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은 위 협약에 1966. 8. 16. 가입하였고,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라 함)도 1957년에 가입한 바 있



는데, 결국 피고측의 원고들에 대한 포로송환 거부와 강제노역 및 50년에 가까운 강제역류는 위 협약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다.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국제법규 및 국내법

피고측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강제노역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1930. 6. 28.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 총회에서 결의된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제29호 협약²⁾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 등에도 위반되는 것인데, 위 국제관습법 및 협약 등도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고,

국내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1항,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조 등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2) 위 협약의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rticle 1.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1조 1항.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인 노동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억제한다.

Article 2.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조 1항. 본 협약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행위를 의미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 청구부분을 철회하고, 위자료 청구만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나. 위자료

이 사건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권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였고 지속기간도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어져 왔던 사건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측에 의해 송환이 거부되고 강제노역에 처해지면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는 점, 원고들은 청년시절에 전쟁에 나섰다가 50년 가까이 강제역류되었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원고들이 겪는 상실감 또한 너무나 클 것이라는 점,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강제노역작업이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깊은 지하 갱도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씩 고강도로 이루어졌던 점, 고향에 살아 있던 원고들의 가족 역시 원고들이 전쟁 중 사망한 것으로 알고 살아 오면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고,

본건과 유사한 인권말살적 강제노역사건 및 북한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들에서의 위자료 금액 인정기준³⁾을 참작하면,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최소한 각각 2억원의 위자

3)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상고심 2013다61381호)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 위 강제징용 사건과 비교할 때 본건 국군포로 강제노역 사건은 인권침해의 위법성 정도가 더욱 극심하며, 이 사건 원고들은 한푼의 노동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강제노역 사건은 아니지만, 북한에 납치되어 사망한 김동식 목사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대해 3,000만 달러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감제4호증의1), 월비어 사건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이 북한에 대해 약 5억 113만 달러의 배상을 명한 사실 (감제4호증의 2)이 있는바, 자세한 내용은 원고들이 2019. 11. 29.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상술하였습니다.



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 김정은에 대한 상속과 관련한 청구원인

가. 소의 망 김정일의 손해배상책임

원고들이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시점은 원고 한재복이 2001. 11. 3.이고, 원고 노사홍이 2000. 6. 18.인데, 북한정권이 원고들에 대해 송환거부 후 강제억류시킨 상태에서 원고들을 강제노역에 투입하고, 원고들을 북한사회에 편입시킨 이후로도 국군포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멸시를 하는 등 체제를 동원하여 원고들에 가해진 인권말살적 조치는 피고 김정은의 조부 김일성(1912.4.15.~1994.7.8.) 집권기간에 시작되어 피고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1942.2.16.~2011.12.17.)의 집권기간으로 이어졌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는 탈북시점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하겠습니까.

위 김일성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습왕조 및 전제왕권적 국가로 정착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내각수상, 군사위원회 위원장, 인민군총사령관 및 주석 등으로 재임하였고, 그를 이어 집권한 위 김정일도 1991년 인민군 최고사령관, 1993년 국방위원장을 거쳐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하여 1997년 당 총비서, 1998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를 폐지하고 권한이 더욱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었으며, 2003년과 2009년 국방위원장에도 다시 재추대되었고,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총비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 등에 선임되었습니다.

위 김정일은 비법인 사단인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대표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대를 이어 직



간접적으로 지휘 통솔한 사람이므로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나.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상속

위 김정일은 2011. 12. 17. 사망하여 그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배우자 김옥(1964.생), 아들 김정남(1971.생, 2017. 사망), 딸 김설송(1973.생), 딸 김춘송(1975.생), 아들 김정철(1981.생), 아들 피고 김정은(1984.생), 딸 김여정(1987.생)에게 공동 상속되었으므로 피고 김정은이 책임져야할 손해배상 채무는 원고들에게 각 26,666,666원(= 200,000,000원×상속지분 2/15)이지만 원고들은 피고 김정은에게 일부 청구로서 소장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로 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위 3항 기재 손해 중에서 일부 청구로서, 피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해서는 위 2항 기재 손해 중 일부 청구로서, 각 소장 기재 금액을 부진정연대책무로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하는바,

이 사건 원고들이 한국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나섰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당하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을 깊이 살피셔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손해배상 책임의 변경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고들에게 50년 가까이 이루어진 장기간의 불법행위는 인권말살적인 행위로서 그동안 원고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본건과 유사한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유린 사건들에서 인정된 위자료 인정 기준을 감안하면¹,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들에게 각 6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피고 김정은의 손해배상 책임의 변경

원고들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계속적 불법행위 전부에 대하여 소외 망 김정일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 김정은에게 위 책임의 상속분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김정은의 조부(祖父)인 소외 망 김일성의 위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상속분도 청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¹ 원고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본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의 위자료 인정기준은 2019. 11. 29., 2020. 4. 1.자로 제출한 각 준비서면에서 상술하였습니다.



가. 소외 망 김일성의 손해배상 책임

(1) 위 김일성은 1948년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설립되면서 내각 수상에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1949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1953년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초로 조선인민군 원수가 되어 김일성 원수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일성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은 가속화되어 김일성에게 최고영도자이자 국가수반을 의미하는 '수령'이라는 호칭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나아가 김일성에게 '경애하는 수령'이라는 최고의 수식어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에서 통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일성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주석제를 도입하여 주석에 취임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임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일성은 내정, 외교, 국방 등의 권력을 독차지하면서 독재권력을 공고히 하여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습왕조 전제왕권적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일성은 1993년 김정일에게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겨줄 때까지 위 위원장직을 유지하였으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주석으로 재직하였습니다.

(2) 따라서 위 김일성은 이미 사실상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1953년부터 자신의 사망으로 자신의 아들인 소외 망 김정일에게 그 권력을 완전히 넘겨주는 1994년까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대표자였던 자입니다.



(2) 결국 위 김일성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법행위 중 원고들의 강제노역이 시작된 1953년도부터 본인의 사망시인 1994년까지 약 40년간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의 해당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부진정언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김일성은 전체 위자료 6억원 중 5억 1천만원(= 6억원 X 85%(=40년/47년))에 대해 원고들에게 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김정일의 손해배상 채무 상속

위 김일성은 1994. 7. 8. 사망하여 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당시 생존해 있던 배우자 김성애(1924.생, 2014.사망), 아들 김정일²(1941.생, 2011.사망), 딸 김경희³(1946.생), 딸 김경진(1952.생), 아들 김평일(1954.생), 아들 김영일(1955.생, 2000.사망)에게 공동 상속되었으므로, 당시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소의 망 김정일이 원고들에게 책임져야할 손해배상 채무는 각 78,461,538원(=5억 1천만원 × 상속지분 2/13⁴)입니다(갑 제20호 증 가계도).

² 김일성과 그의 또다른 배우자 김정숙(1949. 사망)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³ 위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김일성과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⁴ 위 김일성의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상 구민법 적용 기한인 1990. 12. 31. 이후인 1994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분은 구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 적용됩니다(민법 부칙<1990.1.13. 법4199> 제12조 제1항).



다. 소외 망 김정일의 손해배상 책임

(1) 위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그 권력을 세습한 1994년부터 본인이 사망한 2011년까지 김일성이 그러하였듯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대표자였던 자입니다.

(2) 피고 김정일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법행위 중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부터 원고 노사홍이 탈북한 2000년을 거쳐 원고 한제복이 탈북한 2001. 11. 3. 까지 약 7년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의 해당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전체 위자료 6억원 중 9천만원 (= 6억원 × 15% (= 7년/47년))에 대해 원고들에게 각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라.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상속

(1) 위 김정일은 사망 당시 원고들에 대해 김일성으로부터 상속한 각 손해배상채무 78,461,538원, 자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 90,000,000원 합계 168,461,538원의 각 채무가 있었습니다.

(2) 김정일은 2011. 12. 17. 사망하여 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배우자 김옥(1964.생), 아들 김정남(1971.생, 2017. 사망), 딸 김설송(1973.



생), 딸 김춘송(1975.생), 아들 김정철(1981.생), 아들 피고 김정은(1984.생), 딸 김여정(1987.생)에게 공동상속되었으므로 피고 김정은이 책임져야할 손해 배상 채무는 원고들에게 각 22,461,538원 (=168,461,538원 × 상속지분 2/15)입니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 김정은에게 일부 청구로서 변경 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로 합니다.

3.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기산일 변경

원고들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들에게 가한 강제노역에 대한 불법행위만을 전제로 변경 전 청구취지를 구성하였으나, 원고들의 탈북시까지 이들의 송환을 거부하고 억류한 불법행위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바,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법행위가 종료되는 원고들의 각 탈북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지연손해금채권 부분의 청구취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위 1항 기재 위자료 중 일부 청구로서, 피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위 2항 라. 기재 위자료 중 일부 청구로서, 각 위 변경 후 청구취지 상 기재 금액을 부진정연대채무로 이행할 것을 구합니다.



정본입니다.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안명애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